

측정대행업 관련 법령개정 내용

□ 측정대행업 관리 강화

구분	개정 필요성	개정 사항	조문 내용	비고
<p>법률 제2조 (용어의 정의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료채취가 측정·분석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- 정도관리 부적합 업체가 시료채취(입찰참가)를 지속하는 주요 원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측정·분석·평가를 위한 시료채취가 포함됨을 명시 	<p>1. "시험·검사등"이란 ----- 환경오염 또는 환경유해성의 측정·분석·평가(측정·분석·평가를 위한 시료의 채취를 포함한다), -----.</p> <p><개정 2017.12.12.></p>	<p>2018. 12. 13. 시행 예정</p>
<p>법률 제16조 (측정대행업의 등록) 제35조(과태료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측정대행업체 간 과당 경쟁으로 적정가*에 못 미치는 수수료로 측정대행 계약체결 성행 * 측정대행업협회에서 적정 수수료 공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측정대행업체가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20일 이내에 시·도지사(관리청)에 통보 - 통보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(100만원 이하) 	<p>제16조(측정대행업의 등록) ⑤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 <신설 2017.12.12.></p> <p>제35조(과태료)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개정 2017.12.12.></p>	<p>2018. 12. 13. 시행 예정</p>

구분	개정 필요성	개정 사항	조문 내용	비고
			<p>가. (생략)</p> <p>나. 법 제18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표준 시료의 분석능력에 대한 숙련도를 갖출 것(소음·진동 분야는 제외한다)</p> <p>다. 법 제18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현장평가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을 것(소음·진동 분야는 제외한다)</p> <p><시행규칙></p> <p>제14조(측정대행업의 등록) ③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-----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<개정 2017.7.17.>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3.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 확인서</p> <p>④ 제3항 전단에 따라 측정대행업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영 제1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숙련도 시험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현장평가를 받은 후 적합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. <신설 2017.7.17.></p> <p>⑤ 제4항에 따른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신청서에 다음</p>	

구분	개정 필요성	개정 사항	조문 내용	비고
			<p>3)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이 개설하는 수질 분야 시료채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교육과정에 포함된 평가를 통과한 사람 1명</p> <p>4) 수질분야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 확인서</p> <p>3. 소음·진동 분야 (기술능력)</p> <p>2)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이 개설하는 소음·진동 분야 현장 측정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교육과정에 포함된 평가를 통과한 사람 1명</p> <p>4. 실내공기질 분야 (기술능력)</p> <p>2)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이 개설하는 실내 공기질 분야 시료채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교육과정에 포함된 평가를 통과한 사람 1명</p> <p>3) 실내공기질 분야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 확인서</p> <p>5. 악취 분야 (기술능력)</p> <p>2)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이 개설하는 악취 분야 시료채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교육과정에 포함된 평가를 통과한 사람 1명</p> <p>3) 악취 분야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</p>	

□ 기타 제도개선 사항

구분	개정 필요성	개정 사항		비고
<p>법률 제16조, 제17조, 제18조의4, 제28조, 제29조, 제31조, 제35조 (측정대행업의 등록 등에 관한 권한 이양)</p>	<p>•측정대행업 등록·관리 업무는 시·도지사가 수행 ('05.7.1, 이양) * 지방자치발전위에서 시·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 결정('10.11)</p>	<p>•측정대행업 등록 등에 관한 시·도지사의 권한을 대도시* 시장에게 이양 * 인구 50만 이상의 시</p>	<p>제16조(측정대행업의 등록) ① 대기오염물질 -----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(이하 "측정대행업"이라 한다)을 하려는 자는 ----- 대도시 시장(「지방자치법」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·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12.12.> ③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(이하 "측정대행업자"라 한다)에게 측정대행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12.12.> ⑤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 <신설 2017.12.12.> 제17조(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등) ①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측정대</p>	<p>2018. 12. 13. 시행 예정</p>

			<p>제28조(사후관리) ② 환경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·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·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7.12.12.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3. (생략) 4. 측정대행업자 5. (생략) <p>제29조(청문) 환경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12.12.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3. (생략) 4.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5. (생략) <p>제31조(권한의 위임)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, 지방환경관서의 장, 시·도지사 또는</p>	
--	--	--	---	--

<p>시행령 제17조 (권한의 위임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공정시험기준 제·개정 업무가 환경부(고시)와 국립환경과학원으로 분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공정시험기준 고시 및 관계기관(산업표준 포함) 협의 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 	<p>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. <개정 2017.7.17.></p> <p>1.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고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</p> <p>1의2. 법 제7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</p>	<p>2017.7.17. 시행</p>
<p>시행규칙 별표 9 (측정대행업의 세부등록기준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 개정으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항목이 변경되었으나, 실내공기질 분야 측정항목 미반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실내공기질 분야 측정항목에 미세먼지(2.5)와 곰팡이를 추가하고, 오존(O₃)은 선택항목으로 조정 * 석면은 석면건축물 측정업무 추가로 현행 유지(석면안전관리법) 	<p>4. 실내공기질 분야 (시설 및 장비)</p> <p>2) 다음 항목을 실내공기질 분야 공정시험기준 중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시험방법에서 주 시험방법으로 측정 분석할 수 있는 장비 및 실험기기가 ~ 자) (생략)</p> <p>차) 미세먼지(PM-2.5)</p> <p>카) 곰팡이</p> <p>타) 오존(O₃)(「학교보건법」 제4조 제1항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을 측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</p>	<p>2018.3.29. 시행</p>

측정대행업 관련 법령개정 내용

□ 측정대행업 관리 강화

구분	개정 필요성	개정 사항	조문 내용	비고
법률 제2조 (용어의 정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료채취가 측정·분석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- 정도관리 부적합 업체가 시료채취(입찰참가)를 지속하는 주요 원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측정·분석·평가를 위한 시료채취가 포함됨을 명시 	<p>1. "시험·검사등"이란 -----환경오염 또는 환경유해성의 측정·분석·평가(측정·분석·평가를 위한 시료의 채취를 포함한다), -----.</p> <p><개정 2017.12.12.></p>	2018. 12. 13. 시행 예정
법률 제16조 (측정대행업의 등록) 제35조(과태료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측정대행업체 간 과당 경쟁으로 적정가*에 못 미치는 수수료로 측정대행 계약체결 성행 * 측정대행업협회에서 적정 수수료 공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측정대행업체가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20일 이내에 시·도지사(관리청)에 통보 - 통보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(100만원 이하) 	<p>제16조(측정대행업의 등록) ⑤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<신설 2017.12.12.></p> <p>제35조(과태료)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개정 2017.12.12.></p>	2018. 12. 13. 시행 예정

구분	개정 필요성	개정 사항	조문 내용	비고
			<p>가. (생략)</p> <p>나. 법 제18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표준 시료의 분석능력에 대한 숙련도를 갖출 것(소음·진동 분야는 제외한다)</p> <p>다. 법 제18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현장평가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을 것(소음·진동 분야는 제외한다)</p> <p><시행규칙></p> <p>제14조(측정대행업의 등록) ③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-----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<개정 2017.7.17.></p> <p>1. · 2. (생략)</p> <p>3.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 확인서</p> <p>④ 제3항 전단에 따라 측정대행업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영 제1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숙련도 시험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현장평가를 받은 후 적합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. <신설 2017.7.17.></p> <p>⑤ 제4항에 따른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신청서에 다음</p>	

구분	개정 필요성	개정 사항	조문 내용	비고
			<p>3)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이 개설하는 수질 분야 시료채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교육과정에 포함된 평가를 통과한 사람 1명</p> <p>4) 수질분야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 확인서</p> <p>3. 소음·진동 분야 (기술능력)</p> <p>2)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이 개설하는 소음·진동 분야 현장 측정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교육과정에 포함된 평가를 통과한 사람 1명</p> <p>4. 실내공기질 분야 (기술능력)</p> <p>2)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이 개설하는 실내 공기질 분야 시료채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교육과정에 포함된 평가를 통과한 사람 1명</p> <p>3) 실내공기질 분야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 확인서</p> <p>5. 악취 분야 (기술능력)</p> <p>2)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이 개설하는 악취 분야 시료채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교육과정에 포함된 평가를 통과한 사람 1명</p> <p>3) 악취 분야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</p>	

□ 기타 제도개선 사항

구분	개정 필요성	개정 사항		비고
<p>법률 제16조, 제17조, 제18조의4, 제28조, 제29조, 제31조, 제35조 (측정대행업의 등록 등에 관한 권한 이양)</p>	<p>•측정대행업 등록·관리 업무는 시·도지사가 수행 ('05.7.1, 이양) * 지방자치발전위에서 시·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 결정('10.11)</p>	<p>•측정대행업 등록 등에 관한 시·도지사의 권한을 대도시* 시장에게 이양 * 인구 50만 이상의 시</p>	<p>제16조(측정대행업의 등록) ① 대기오염물질 -----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(이하 "측정대행업"이라 한다)을 하려는 자는 ----- 대도시 시장(「지방자치법」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·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12.12.> ③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(이하 "측정대행업자"라 한다)에게 측정대행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12.12.> ⑤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 <신설 2017.12.12.> 제17조(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등) ①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측정대</p>	<p>2018. 12. 13. 시행 예정</p>

			<p>제28조(사후관리) ② 환경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·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·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7.12.12.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3. (생략) 4. 측정대행업자 5. (생략) <p>제29조(청문) 환경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12.12.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3. (생략) 4.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5. (생략) <p>제31조(권한의 위임)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, 지방환경관서의 장, 시·도지사 또는</p>	
--	--	--	---	--

<p>시행령 제17조 (권한의 위임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공정시험기준 제·개정 업무가 환경부(고시)와 국립환경과학원으로 분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공정시험기준 고시 및 관계기관(산업표준 포함) 협의 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 	<p>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. <개정 2017.7.17.></p> <p>1.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고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</p> <p>1의2. 법 제7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</p>	<p>2017.7.17. 시행</p>
<p>시행규칙 별표 9 (측정대행업의 세부등록기준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 개정으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항목이 변경되었으나, 실내공기질 분야 측정항목 미반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실내공기질 분야 측정 항목에 미세먼지(2.5)와 곰팡이를 추가하고, 오존(O₃)은 선택항목으로 조정 * 석면은 석면건축물 측정업무 추가로 현행 유지(석면안전관리법) 	<p>4. 실내공기질 분야 (시설 및 장비)</p> <p>2) 다음 항목을 실내공기질 분야 공정시험기준 중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시험방법에서 주 시험방법으로 측정 분석할 수 있는 장비 및 실험기기가 ~ 자) (생략)</p> <p>차) 미세먼지(PM-2.5)</p> <p>카) 곰팡이</p> <p>타) 오존(O₃)(「학교보건법」 제4조 제1항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을 측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</p>	<p>2018.3.29. 시행</p>